

삭삭

알아두면 좋은

정규직 전환 지원과 혜택



정규직 전환,
기업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숙련인력 확보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맞은 이직을 줄이고 업무지속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전환 근로자의 업무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전환 근로자의 소속감과 책임감
증대로 고객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함께하면 든든해요

“신규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어요”

사내하도급 근로자 88명을 직접고용하면서 고용센터에서
간접노무비로 1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었습니다.
직원들의 소속감과 애사심이 강해지면서 노사상생 기업으로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덕분에 신규채용의 어려움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 A사



“기업경쟁력에 청신호가 켜졌어요”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간제 56명을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전환으로 인한 임금증가분(11%)은
고용센터에서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부담이 줄었죠.
전환 근로자들의 조직몰입도가 높아지면서 기업경쟁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의료용기기제조업 B사



“고객서비스의 질이 높아졌어요”

‘인터넷 유지보수직’ A/S 기사 26명을 정규직 전환했는데,
임금상승과 처우개선 등에 들어가는 부담은 고용센터에서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업무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게 돼서 고객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통신장비수리업 C사



정규직 전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참여를 승인받고 아래 대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기간제)
- ☑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상시성과 전속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택배기사 등



지원내용

임금증가액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임금증가액보전금

사업주가 추가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

간접노무비

임금증가액이 없어도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예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이 월 40만 원 인상되는 경우

임금증가액보전금	32만 원(임금증가분의 80%)
간접노무비	30만 원

▶▶ 전환 근로자 1인당 총 월 62만 원, 1년간 744만 원 지원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일 것
- 정규직 전환일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4대 보험을 가입할 것
-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지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여기서 잠깐! 지원제외 기업이 있어요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희 주점업 ③ 무도유희 주점업
④ 기타 주점업 ⑤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⑥ 무도장 운영업
-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 피보험자 수의 120%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는 5인

파견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기간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지원인원 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절차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기업에 드리는
추가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제조·구매 시 우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해 경쟁입찰을 할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있어 신인도 부문 점수를 부여(중기부 2점, 조달청 1.5점)합니다.

» 중소기업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 우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일자리 질’ 분야에서 점수를 부여(10점)합니다.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란 고용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에서 우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분야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고용질서 준수(감점 20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선정할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용창출노력 부문에서 점수를 부여(1점)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용역적격심사 시 우대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받은 기업으로서 용역적격심사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 신인도 부문 점수를 부여(1.5점)합니다.



이런 혜택도 있어요~
세액공제 및 금융비용 지원

기획재정부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파견·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정규직 전환자 1인당 1,000만 원(중견기업은 7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20.12.31.까지 지원 연장 예정



사후관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요건

대상	전환형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
파견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원사업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직접고용

신청방법

01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02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신청서 제출

03

사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반영 확인

» 세액공제는 정부에서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사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서에 세액공제 신청이 반영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Tip 세액공제 중복적용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㉓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 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상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20.12.31.까지 지원 예정

여기서 잠깐! 임금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 '임금'이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지원요건

-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전환 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자로서 매월 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 임원, 근로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신청방법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은행

Q 정규직 채용 및 전환 시 금융비용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하는 기업에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내국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한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 및 전환 근로자 1인당 50만 원의 금융비용(대출이자 및 수수료)을 지원합니다.

- »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가능
- » '22.12.31.까지 지원 예정(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요건

- I-one JOB*을 활용하여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 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사이트
- 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여기서 잠깐! 지원제외 기업이 있어요

-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정규직 전환 지원 및 혜택 관련 문의처



항목	담당	연락처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번없이 1350
정규직 전환 및 전환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 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국세청 콜센터 126
정규직 채용 및 전환 시 금융비용 지원	기업은행 창업벤처기업부	02-6322-5178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제조·구매 시 우대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042-481-8918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시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4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044-203-5399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용역적격심사 시 우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회적가치전략실	054-750-4058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부 연락처는 16~17p 참고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문의처)

※ 각종 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l.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4층 기업지원과(장교동, 장교빌딩)	02-2004-7371~3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02-580-4973, 4956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11번차타워 동관 4층 기업지원팀	02-2142-8420, 8896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5층(도화동, 삼향프라자)	02-2077-6001~6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02-2639-2333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02-2171-1800-5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02-3468-4703, 4706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02-3282-9384-6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기업지원과	032-460-4811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재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	032-540-5751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10층 기업지원팀(서구청 제2청사)	032-540-2050
부천고용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	032-320-8972
김포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031-999-0942
고양고용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031-920-3962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 기업지원팀	031-828-0831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031-231-7897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031-739-3168
안양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트타워 4층 기업지원팀	031-463-0765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	031-412-6967
평택고용복지+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2층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031-646-1238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3층 기업지원팀	033-250-1947
강릉고용복지+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강릉고용센터 1층	033-610-1913
속초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033-630-1909
원주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3-769-0943
태백고용복지+센터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33
삼척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033-570-1906
영월고용복지+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플러스센터(2층)	033-371-6254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과	051-860-202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	051-760-7212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시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051-330-9806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고용센터빌딩 6층 기업지원팀	055-239-0961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기업지원팀	052-228-1925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055-330-6437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055-379-2430
밀양고용복지+센터	경남 밀양시 백민로 69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055-350-2804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055-650-1814

센터명	주소	연락처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시 수성구 동대대로 392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기업지원과	053-667-6036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시 서구 새대대로 9, 7층 기업지원팀	053-605-6466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달성차 산업단지 내 하나은행 2층)	053-605-9518
대구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3-4층	054-970-1906
경주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동천동)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고용지원팀	054-778-2526
포항고용복지+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흥중로 221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70
구미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440-3361
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변영로 88(휴천동) 2층	054-639-1135
문경고용복지+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층	054-559-8231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2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북동) 7층 기업지원과	062-609-8655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충) 2층	062-960-3214
전주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063-270-9201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북 남원시 향안로 39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3-630-3911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3-530-7501
익산고용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07
김제고용복지+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6
군산고용복지+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패키지팀	063-450-0637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변영로 145, 2층 부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3-580-0515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효호로 147, 4층	061-720-9150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용현북로 33, 2층	061-650-0140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앙로 410, 8층	061-798-1901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상동)	061-280-0561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로 61, 2층	061-530-2911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 4층 기업지원과	042-480-6011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5층 공주고용센터(신관동)	041-851-8507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041-731-8601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을 테마빌안길 60, 3층	044-861-8993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기업지원팀	043-230-6721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041-620-7440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043-850-4030, 4032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도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043-640-9322, 9317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041-930-6243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로 22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041-661-5614
제주고용복지+센터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064-710-4494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solid blue top and bottom lines and a dashed red middle line, repeated 10 times.



정규직 전환
지원과 혜택